

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

◉ 생명윤리위원회(IRB: Institutional Review Board)

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, 개인정보보호,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·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·연구·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

● IRB 심의를 왜 받아야 하는가?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- 인간대상연구란?
- 1.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
- 2.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!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, 대면(對面)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
- 3.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·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
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.

(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&D 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)

※ IRB 심의와는 별개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및 사전동의 의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.

- IRB 심의 신청 시 이행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정독 바랍니다 -

1 내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인가?

- "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진행" = 인간대상연구 (심의 대상, 서면동의 필요)
- "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" = 인간대상연구 (심의 대상, 서면동의면제 가능)
- "사람들을 모집해서 운동을 시키고 신체의 변화를 측정" = 인간대상연구 (심의 대상, 서면동의 필요)
- "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후향적 연구를 진행" = 인간대상연구 (심의면제 대상)

2 IRB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?

- 교원 학술논문: 정부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,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박사학위 논문: 위와 동일, 학술지 투고 등 절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 심의 통과를 권장합니다.
- 석사학위 논문: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심의 신청 여부 결정 (단,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심의 필수)
 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연구의 경우, IRB 심의 필수
 - ※ 사회과학 및 보건·의료 분야에서는 학술지 투고 시 IRB 승인서 제출이 필수화되고 있는 추세
 - ※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경우, IRB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윤리 측면에서 완벽한 연구물로 인정



③ (IRB 심의 신청 전) 연구자 숙지사항

- 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IRB 심의는 최소 연구시작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
 - 재심의 대상일 경우에도, 최소 1~2개월 이상 기간 소요되므로 IRB 심의는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.
 - [시정승인] 또는 [보완] 처리 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(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)
-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경우 심의 신청 불가능 : IRB는 '연구계획'만을 심의 !
- 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·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함.
 -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(교수 및 전문의 등)가 위원으로 참여.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판단
 - 연구대상자의 취약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모집 자료(공고문, 설명문 등)를 작성할 것.
 - ex)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,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(괄호 표기 등), 글자 크기 조절, 비밀 보장 등의 조치

4 (IRB 심의 신청 전) 연구진 생명윤리 교육이수 ※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, 지도교수 모두 해당

- IRB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필요 (아래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수)
-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① :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
- (1) <u>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</u> 접속 (http://edu.cdc.go.kr/)
- (2) [회원가입] → [과정안내] → [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]
- (3) 수강을 완료하고 수료증(교육 이수증)을 다운로드하여 심의 신청 시 제출
-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② :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온라인 교육
- (1)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접속 (http://edu.irb.or.kr/)
- (2) [회원가입] → [온라인 교육과정] → [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]
- (3) 수강신청 후, 수강을 완료하고 수료증(교육 이수증)을 다운로드하여 심의 신청 시 제출
- 국가생명윤리정책원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 이수증도 인정
- 교육이수증이 없을 시 심의 신청 불가능 (e-IRB 시스템 상에서 심의신청 메뉴 비활성화)

⑤ (IRB 심의 신청 시) 제출 서류 - 양식 별도

- ① 연구심의 신청서 [필수 제출]: [e-IRB 시스템] → [신청(보고) 작성] → [신규계획] 연구심의 신청서 작성
 - 신청서 상 연구예정기간은 가급적 1년(심의일 기준)으로 설정해 주세요.(IRB 승인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을 부여함)
 - 승인 기간 내 연구 종료 시 e-IRB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필요, 승인 기간 연장 필요할시 e-IRB 변경계획 제출 필요
- ② 연구진행 서약서 [필수 제출] : 연구자 서명 날인 필수
- ③ 연구계획서 요약 [필수제출]: 연구계획서 1-2페이지 요약
- ④ 연구계획서 요약(PPT) [필수 제출] : 연구계획서 요약을 간단하게 PPT화하여 제출
 -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 입각하여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작성할 것 (최대 10page 넘지 않도록 간략하게)
 - 제출된 PPT는 IRB 심의 시 전문위원에 의해 발표 자료로 활용되므로 핵심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⑤ 연구계획서 [필수 제출] : 가급적 1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
 - 연구계획서는 학술적 견지에서의 연구목적과 세부적인 연구방법(연구대상자 모집 방법의 구체성 등)이 포함되어야 함,
 - 연구계획서가 터무니없이 부실한 경우, 심의 안건 상정 전 행정검토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음.



- ⑥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or 서면동의면제사유서 中 1가지 [필수 제출]
 - 인간대상연구를 할 시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가 필요함. (서면동의 받는 것이 원칙)
 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동의면제가 가능함.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인간대상연구의 동의)

-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항이 포함된 서면동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받아야 한다.
- 1. 인간대상연구의 목적
- 2.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, 절차 및 방법
- 3.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
- 4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- 5.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
- 6.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- 7.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. 1. 법정대리인
 - 2.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,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**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**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 - 1.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,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
-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※ 서면동의면제사유서를 제출하여도 IRB 심의결과에 따라 동의서 면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.
- ⑦ 연구진 이력서 [필수 제출] :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(지도교수 포함) ※ 자유 양식 가능
- ⑧ 연구진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[필수 제출] :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(지도교수 포함)
- ⑨ 모집 공고문 [공개모집 방법을 활용하거나 공고문 사용 시 필수 제출]
- ① 설문지 or 질문리스트 [설문조사 / 인터뷰하는 경우 필수 제출]
- ① 기록·측정자료 [기록 및 측정할 시 필수 제출] : 실험기록지, 증례기록서 등
- ① 지도교수 서약서 [학위 논문의 경우 필수 제출]
- ③ 기타 연구 관련 자료 : 연구비산정예산서 등

□ (IRB 심의 면제 신청 시) 제출 서류

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(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)를 활용하는 후향적 연구에 한해 심의면제 가능

- ① 심의면제 신청서 [필수 제출] : e-IRB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제출
- ②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[필수 제출]
- ③ 연구계획서 요약 [필수 제출] : 연구계획서 1~2페이지 요약
- ④ 연구진 이력서 및 공동연구자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[필수 제출]



⑥ (IRB 심의 신청 시) 제출 방법 : 공문 및 e-IRB 시스템을 통해 심의 신청

- 연구자가 소속된 학부(과) → 연구지원과로 전자문서 공문 발송
 - (1) 공문 제목: IRB 심의 신청 (소속 / 연구책임자명)
 - (2) 붙임은 따로 붙임(별도 송부) 처리하고 연구자가 직접 e-IRB 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 업로드
- 연구자는 e-IRB 시스템(https://www.e-irb.com:3443/index.jsp)을 통해 연구심의 신청
 - 보다 상세한 '회원가입' 및 '심의신청' 방법은 별도 매뉴얼(e-IRB 회원가입 안내, e-IRB 심의신청 방법 안내) 참고
- 제출기한 내로 '공문 및 신청서'가 접수되어야 익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
 - 제출기한 엄수, 지연제출 시 다음 차수 심의에 이월 상정 (제출기한: 본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공지)
 - 심의면제 신청의 경우에도 e-IRB 신청 및 공문 제출 필수
- IRB 심의는 본교 소속 연구자에 한해 신청 가능(심의비 무료)
- 정규심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개최
 - 접수된 안건이 없을 경우 심의 개최하지 않음. / 주요 행사 및 위원회 사정 등에 의해 심의일 변경될 수 있음.
- 학위논문 연구 IRB의 경우, 지도교수 검토(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필수) 후 심의 신청
- 서울시립대학교 IRB 심의 신청 프로세스



기 (IRB 심의 결과 통보 시) 조치사항

- IRB 정규심의 후 심의 결과 통보까지는 1주 정도 소요
- IRB 심의 의견에 따른 연구자 이행사항 부여(서류보완 조치 등)
- 심의 결과 [승인]
 - 연구를 진행함에 문제가 없는 경우
 ※ IRB에서 요구한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을 시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연구진행 가능
- 심의 결과 [시정승인]
 - 일부 조건을 이행할 시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 ※ 보완사항 이행 후, e-IRB 시스템을 통해 [시정계획] 제출 → 전문위원 신속심의 후 최종 승인여부 결정
- 심의 결과 [보완]
 - 연구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
 ※ 서류를 전면 수정 / 재작성하여 [보완계획] 제출 → 다음 차수 정규심의에서 최종 승인여부 결정
- 심의 결과 [반려]
 - 심의 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, IRB에서 해당 연구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※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방법을 새롭게 수립한 후, IRB 심의 신청 필요



图 (IRB 승인 후) 연구 종료까지 이행사항

- IRB 심의결과 최종 [승인]될 시 연구 진행가능 : 연구대상자 모집 가능
- IRB 승인 시 승인기간을 부여함. (IRB 승인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유효)
 - 승인일 이내에 연구대상자 접촉 등을 마무리하여야 함. 승인일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경우 [변경계획] 제출
- IRB 승인기간 내 연구가 종료될 경우
 - 연구자는 e-IRB 시스템을 통해 [종료보고] 및 [결과보고] 제출 처리(연구자 의무사항이므로 필히 이행)
 - 승인기간 이후에는 IRB에서 강제로 종료 처리 (연구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시 추후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)
- IRB 승인일 이후 1년 이내로 연구를 종료할 수 없을 시(연구를 지속할 시)

□ IRB 심의일정 (2021년 6월 ~ 12월)

IRB 정규심의 예정일	IRB 심의신청 서류제출기한
<u>2021. 6. 4. (금)</u>	2021. 5. 25. (화) 까지
<u>2021. 7. 2. (금)</u>	2021. 6. 22. (화) 까지
<u>2021. 8. 6. (금)</u>	2021. 7. 27. (화) 까지
<u>2021. 9. 3. (금)</u>	2021. 8. 24. (화) 까지
<u>2021. 10. 8.(금)</u>	2021. 9. 28. (화) 까지
<u>2021. 11. 5.(금)</u>	2021. 10. 26. (화) 까지
<u>2021. 12. 3. (금)</u>	2021. 11. 23. (화) 까지

[※] 심의일정은 주요 행사 및 위원회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.

기타사항

-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탈 (http://irb.or.kr/)
 - 정보마당 \rightarrow FAQ 참조
-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(http://uos.ac.kr/)
 - 대학안내 ightarrow 대학현황 ightarrow 규정 ightarrow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참조
-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(http://kairb.org/)
 -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(우리대학은 정회원 기관으로 가입되어있음) → 임상시험 관련 자료 이용 가능
- 기타 IRB 관련 문의
 - 서울시립대학교 IRB 행정간사 한율(☎ 02-6490-6356, ☑ yurasmile87@uos.ac.kr)

○ 서울시립대학교 e-IRB 운영 안내 (2020. 6. ~)

본교의 e-IRB 공동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

2020학년도 7월 심의(6월 제출)부터는 e-IRB 시스템을 통해 심의를 신청받고 있습니다.

▶ 서울시립대학교 e-IRB 주소: https://www.e-irb.com:3443/index.jsp ※ [대학] 서울시립대학교 클릭

유의사항: 회원가입 전, 최근 2년 이내 이수한 생명윤리(연구윤리) 교육이수 필요

(교육 미검증 시 시스템 상 심의 신청 불가능)